

지 부 보 조 금 규 정

제1조 지부 보조금은 지부의 활성화와 소속된 지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부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.

제2조 지부 보조금은 회원들이 납부하는 홈페이지 호스팅비를 재원으로 한다.

제3조 지부 보조금의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지부 보조금은 지부장과 지부운영규정 제16조의 사무국이 구성된 지부에 지원한다.
- ② 당월 납부된 홈페이지 호스팅비에서 납부한 회원 수에 1만 원을 곱한 금액으로 지원한다.
- ③ 운영비 미지원기관은 지원 기준 산정에서 제외한다.
- ④ 지부 보조금의 지급일은 다음 달 10일 전까지로 한다.

제5조 지부 보조금의 구성과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지부 보조금은 지부 운영을 위한 지부 운영비와 지부장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직책 보조금으로 구성된다.
- ② 직책 보조금은 다음의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.
 - 가. 지부 회원 수 1~100명은 지부 보조금의 30%
 - 나. 지부 회원 수 101~110명은 가항에 1만 원을 가산한다.
 - 다. 지부 회원 수 111~120명은 가항에 2만 원을 가산한다.
 - 라. 지부 회원 수 121~130명은 가항에 3만 원을 가산한다.
 - 마. 지부 회원 수 131~140명은 가항에 4만 원을 가산한다.
 - 바. 지부 회원 수 141~150명은 가항에 5만 원을 가산한다.
 - 사. 지부 회원 수 151~160명은 가항에 6만 원을 가산한다.
 - 아. 지부 회원 수 161~170명은 가항에 7만 원을 가산한다.
 - 자. 지부 회원 수 171~180명은 가항에 8만 원을 가산한다.
 - 차. 지부 회원 수 181~190명은 가항에 9만 원을 가산한다.
 - 카. 지부 회원 수 191~200명은 가항에 10만 원을 가산한다.

제6조 지부 운영비 사용기준

- ① 지부 운영비는 지부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다.
- ② 지부 운영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.

③ 지부 운영비는 인건비로 지출할 수 없다. 단, 지부 사무국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의 인건비로는 지출할 수 있다.

④ 지부 운영비는 직책 보조금으로 전용할 수 없다.

제7조 직책 보조금 사용기준

① 직책 보조금은 지부장의 개인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.

② 직책 보조금은 제5조 ①항에도 불구하고 지부 총회 과반수 찬성에 의한 결의에 따라 지급 대상과 사용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.

③ 직책 보조금은 지부 사업의 목적에 따른 직무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한다.

④ 감사(지부)는 직책 보조금 사용 내역을 감사할 수 있다.

⑤ 직책 보조금을 지부 사업의 목적과 무관하게 부당한 사용을 했을 경우 지부에 전액 반납한다.

⑥ 직책 보조금을 수령 한 지부장은 분기별 1회, 그 사용 내역을 지부 회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⑦ 직책 보조금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첫째 주내에 지부 운영비 계좌로 송금한다.

부칙

제1조 이 규정에 미비 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.

제2조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규정 제정일 2024. 03. 28